

접 수	의정종합지원 - (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사이버사찰금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5년 4 월 20일

청 원 인

성명 : 이 요 상 (인) 외 2천 9백 9 인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2 (충정로3가 우리타워)

전화번호 : 02-774-4551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소 개 의 원 : 전 해 철 (인) 외 인

					의 장
주무관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2 (충정로3가 우리타워)
	성명 : 이요상 외 2천 9백 9인
건명	사이버사찰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5년 4월 20일
<p>소개의견</p> <p>2014년 6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최근 디지털 통신 환경에서 국가 감시의 확산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한편, 각국 정부에 프라이버시권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3년 12월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유엔 총회는 2014년에 또다시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특별절차 마련을 촉구하는 두번째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p> <p>한국은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가로서 유엔 권고사항에 대하여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정보·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시민들의 전기통신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과 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자신의 사이버 공간에서 충분히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로 인하여 카카오톡 압수수색과 사이버 망명 논란이 국내 경제사회영역에 매우 큰 파장을 미쳤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p> <p>원칙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송수신되는 정보 및 전기통신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사찰이나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정보·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은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되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이메일과 메신저 등 전기통신은 시민들의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으로서 그 압수·수색·검증에 대해서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통신제한조치·위치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자료 또한 영장주의 및 요건을 강화하고 법원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보주체의 통지권 등 권리 또한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p> <p>이상과 같은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에 적극 찬성하며 청원안을 소개합니다.</p>	

소 개 의 원 전 해 철 인

청원서

제목 : 사이버사찰금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I. 청원취지

통신비밀 관련 현행 법제도가 정보·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시민들의 전기통신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용이하게 정보수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반면에,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사찰에 대하여 아무런 통제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들의 필수적인 통신수단인 이메일과 메신저 등 전기통신은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인 바, 일반적인 압수수색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로 규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정보취득을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법원의 영장주의 및 요건을 강화하고 정보주체 통제권을 강화한다.

II. 주요내용

○ 적용 범위와 주의사항을 명확히 함

- 통신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도 목적에 추가함(안 제1조).
- 범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의 통신 및 대화,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아야 함을 선언함(안 제2조).
- 감청의 개념에 ‘대화감청’과 ‘전기통신감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전기통신감청의 경우 “송수신 중인”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규정함.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과거의’ 통신사실확인자료만 대상으로 하여 대상을 한정함.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규정된 ‘통신자료(가입자정보)’를 통합하여 ‘통신자료’라 정의하고, 이에 대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도록 함. 한편, 위치정보 제공은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영장주의를 강화함(안 제3조).
- 이 법의 적용대상인 모든 경우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제 강화

-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남용할 수 없도록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에서 “계획”을 제외하고, 범인의 체포나 증거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요건을 강화함. 또한 개연성 요건을 신설함(안 제6조).
-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남용할 수 없도록 “피내사자”를 통신제한조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오로지 ‘피의자’만 대상이 되도록 제한함. 또한, ‘허가서’를 ‘영장’으로 규정하고 통신제한조치 영장의 소명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규정함.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현행 2월에서 1월로 한정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제7항 단서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요건이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를 허용하게 되어 비례성원칙에 반하는 바 현행 제7조를 삭제함.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남용할 수 없도록 모든 경우에 사후영장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함.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취득한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할 때, 수사기관의 자의적 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인 시민의 통지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지시점을 '종료후 30일 이내'로 제한함. 통지 대상을 피의자 뿐 아니라 모든 송수신 당사자로 확대하고, 통지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통지 유예의 경우 요건을 강화하고, 관할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60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 이메일과 메신저 등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 규정을 신설하고 엄격히 통제함

- 송수신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은 그 요건을 통신제한조치의 수준으로 엄격하게 강화하여 '상당한 이유' 요건과 '보충성' 요건을 규정함. 송수신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 결정(2011.05.26. 자 2009모1190)의 취지를 반영하여 규정함. 또한 압수한 전기통신에 대한 무결성보전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15조).

-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절차에서 피의자의 집행참여권을 명시함. 피의자의 집행참여시 의견개선권을 규정하고, 의견개진을 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안 제16조).

-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사실 통지는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하도록 규정함. 통지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통지기간과 그 연장은 통신제한조치와 마찬가지로 강화함(안 제17조).

○ 통신자료 및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의 통제 강화

- 가입자정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의 제공'과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합하여 "통신자료"로 규정하고 영장주의를 도입하여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함(제18조).

-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은 위치정보에 대한 실시간감청의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함.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의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범죄로 한정하고, 요건에 '충분한 이유'와 '보충성' 요건을 규정함(제20조).

- 기지국수사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고 그 요건을 강화함. 그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로 한정하고, 연쇄범죄 발생 등의 특수한 상황요건을 규정하며, 보충성요건도 규정하여 엄격히 통제함(제21조).

- 통신자료 및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의 경우에도 자료제공 후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함(제22조).

○ 국회 통제 강화

- 현행 법률은 국회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 통제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로' 보고서 제출 및 공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함(제29조).

III.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장제목 신설></u>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그 제한에 관하여는 대상 및 법적 절차 등을 엄격하게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통신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
<u><신설></u>	<p>제2조(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범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성·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성·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p>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4. (현행과 동일) <p><u><삭제></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현행 6.과 동일) 6. "감청"이라 함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대하여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이하 "대화의 감청"이라 한다), 송·수신중인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성·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의 지득 또는 채록 및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하 "전기통신의 감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7. (현행 8.과 동일) <p>8. (현행 8의2.와 동일)</p>

현행	개정안
<p>제외한다.</p> <p>8의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p> <p>9.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p> <p>10. "회원제정보서비스"라 함은 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을 말한다.</p> <p>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u></p> <p>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p> <p>12.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신설></p>	<p>9. (현행과 동일)</p> <p>10. (현행과 동일)</p> <p>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과거의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u></p> <p>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사. <삭제>)</p> <p>12. (현행과 동일)</p> <p>13. "가입자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p> <p>가. 가입자의 성명 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다. 가입자의 주소 라. 가입자의 전화번호 마. 가입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한 가입자 식별번호를 말한다) 바. 가입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p>
<p>※ 전기통신사업법</p> <p>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번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p>14. "통신자료"라 함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가입자정보"를 말한다.</p> <p>15. "위치정보추적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p> <p>가.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해당 정보통신기기가 이용대기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p> <p>나.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해당 정보통신기기가 이용대기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p>

현행	개정안
<p>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5. (생략)</p> <p>②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4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감청,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하거나 또는 통신자료 및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5. (현행과 동일)</p> <p>②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보충적인 최후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p> <p>③ (현행과 동일)</p>
<p>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p>	<p>제5조(증거사용 금지)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 또는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 전기통신에 대한 불법압수·수색·검증의 집행물이나 그 내용, 불법적으로 제공된 통신자료·위치정보추적자료나 그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p>
<p><장제목 신설></p>	<p>제2장 통신제한조치</p>
<p>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p> <p>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p> <p>1. ~11. (생략)</p> <p>② 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p> <p><제3항 신설></p>	<p>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p> <p>1.~11. (현행과 동일)</p> <p>② 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한다.</p> <p>③ 통신제한조치는 그로부터 해당 범죄의 실행에 관한 증거 또는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로 오로지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의 인식만 가능할 것으로 추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p> <p>① 검사(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p>	<p>제7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영장의 청구 및 발부) ① 검사(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6조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로 통신제한조치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p>

현행	개정안
<p>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p> <p>⑥ 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p> <p>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p> <p>⑧ 법원은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p>	<p>하여 각 피의자별로 통신제한조치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영장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피의자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영장의 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그 피의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영장을 청구하였거나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p> <p>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로 통신제한조치영장을 발부한다.</p> <p>⑥ 제5항의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피의사실의 요지, 죄명, 적용법조,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통신수단,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집행장소·방법·기간 및 그 기간이 경과하면 통신제한조치를 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담당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통신제한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p> <p>⑧ (현행과 동일)</p>
<p>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p> <p>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p>	<p><삭제></p>

현행	개정안
<p>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제6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제5조제1항"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제6조제2항 및 제5항중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한다.</p> <p>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에 관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 <u>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급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u></p> <p>② <u>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제6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u></p> <p>③ <u>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u></p>	<p>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실행 등 긴급한 상황에 있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u></p> <p>②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통신제한조치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u></p> <p>③ <u>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u></p>

현행	개정안
<p>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이하 "긴급감청서등"이라 한다)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p> <p>⑤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 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이 이에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지 못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p> <p>⑧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p> <p>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p>	<p>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이하 "긴급감청서등"이라 한다)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p> <p>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제2항에 따라 청구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집행중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p> <p><제6항 삭제></p> <p><제7항 삭제></p> <p><제8항 삭제></p> <p><제9항 삭제></p>
<p>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① 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p>	<p>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① 제7조 또는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영장은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p>

현행	개정안
<p>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u>통신제한조치허가서(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에서 같다)</u>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u>통신제한조치허가서</u>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치하여야 한다.</p> <p>④ 통신기관등은 <u>통신제한조치허가서</u>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p>	<p>청할 수 있다.</p> <p>②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u>통신제한조치영장</u>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u>통신제한조치영장</u>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치하여야 한다.</p> <p>④ 통신기관등은 <u>통신제한조치영장</u>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p>
<p>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u>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p> <p>② <u>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p> <p>③ <u>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p> <p>④ <u>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u></p>	<p>제10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통신제한조치의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피의자에게만 통지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u> 2. <u>통신제한조치의 대상·종류·방법</u> 3. <u>통신제한조치를 개시한 날짜와 종료한 날짜</u> 4. <u>영장을 발부받은 날짜</u> 5. <u>영장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법조</u> <p><u><제2항 삭제></u></p> <p><u><제3항 삭제></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u></p>

현행	개정안
<p>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p> <p>1.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u>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u></p> <p>2.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p> <p>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u>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 다만,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u>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⑥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4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p>	<p>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p> <p>1.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u>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현저한 때</u></p> <p>2.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p> <p>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u>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 다만,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u>관할 보통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p> <p>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지를 유예한 기간이 종료한 날에 또는 제2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1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 ① 통신제한조치영장을 집행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내용 중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녹음 또는 기타 기록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p> <p>②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의 인식 및 기록 그리고 제1항에 따른 삭제에 관해서는 수사문서로 기록·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p>
<p>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생략)</p>	<p>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현행과 동일)</p>
<p>제1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p> <p>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p> <p>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p> <p>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p>	<p>제13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p> <p>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p> <p>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p> <p>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p>
<p>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p> <p>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p>	<p>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현행과 동일)</p> <p>②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10조,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3조</p>

현행	개정안
<p>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p>	<p>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p>
<p><장제목 신설></p>	<p>제3장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p>
<p><신설></p>	<p>제15조(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① 검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소명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p> <p>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전기통신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집행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이 저장된 내용 가운데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하여 그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해당 정보의 파일을 복제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할 대상을 특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장에 기재된 작성기간 내의 해당 전기통신의 전부를 복제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p> <p>⑤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영장에 기재된 작성기간 내의 해당 전기통신의 전부를 복제하여 제출받은 경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파일 등 제출받은 기록매체를 즉시 봉인하여야 하며, 영장집행이 대상이 된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복제하여 제출한 내용과 봉인된 것이 동일한 것임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p> <p>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봉인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탐색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만을 압수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는 내용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p> <p>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항에 의하여 봉인 조치된 이후 제6항에 따른 탐색 및 압수의 절차에서 그 봉인된 내용이 사후적으로 조작, 편집, 멸실 등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입증할 장치나 문서기록 등은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p> <p>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는 그 대상이 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현황과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p>

현행	개정안
	<p>을 충족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⑨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신설></p>	<p>제16조(당사자 참여권 등) 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제15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p> <p>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5조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그 집행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단,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제15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집행에 참여하는 때에는 영장집행의 방법 및 절차, 그 적법성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개진한 의견은 제15조 제8항에 의하여 작성하는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p>
<p>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7조(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피의자 및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피의자에게만 통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2.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종류와 기간, 전기통신의 송수신 당사자 성명 3.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법조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압수·수색·검증을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사실을 통지할 경우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장제목 신설></p>	<p>제4장 통신자료 및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p>
<p>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8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의 제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또는 가입자정보(이하</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p> <p>④ 삭제</p> <p>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p> <p>⑥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p> <p>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⑧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p> <p>⑨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동조제7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p>	<p>“통신자료”라 한다)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u>검사는 해당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통신자료제공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는 소명자료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에 통신자료제공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영장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u></p> <p>③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영장을 발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영장”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p> <p>④ 제3항의 영장에는 피의자 또는 형집행을 요하는 자의 성명, 피의사실 또는 형집행을 요하는 사실의 요지, 죄명, 적용법조,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통신수단, 통신자료제공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방법·기간 및 그 기간이 경과하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담당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통신자료제공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⑤ 통신자료제공영장을 집행하는 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통신기관에 통신자료제공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자료의 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자료의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자료제공영장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p> <p>⑦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영장의 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발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p> <p>⑧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자료제공영장등 관련자료를 통신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⑨ (현행 ⑧과 동일)</p> <p>⑩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7조(동조제7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u>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u>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9조(법원에의 통신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u>통신자료제공</u>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2제3항·제4항·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p> <p>③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삭제></p>
<p><신설></p>	<p>제20조(범죄수사를 위한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 ① 검사는 피의자가 제6조제1항에 열거된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영장을 받아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용대기상태에서의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은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 한한다.</p> <p>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제5조제1항에 열거된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요청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2회에 한하여 각 10일의 범위 안에서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p> <p>④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치정보추적자료</p>

현행	개정안
	제공의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p>제21조(특정 전기통신 기지국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① 검사는 제6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범죄 중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연쇄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동일 사건의 단서가 여러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발견된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특정 기지국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검사는 특정 기지국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일시와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범죄혐의 및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일시와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p> <p>③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기지국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p>
<p>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동조 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2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제공등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통신자료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관련자료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자료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그 영장에 기재된 죄명 및 구체적인 혐의의 내용,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해당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한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u>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u>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p>	<p>제23조(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18조 내지 제21조에 의한 통신자료 및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자료 및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p>
<장제목 신설>	제5장 감청설비의 인가 등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생략)	제24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현행과 동일)
제10조의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생략)	제25조(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현행과 동일)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생략)	제26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현행과 동일)

현행	개정안
략)	동일)
<p>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p> <p>1. ~ 5. (생략)</p> <p>6.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대표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제27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p> <p>1. ~ 5. (현행과 동일)</p> <p>6.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대표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제10조의5(등록의 취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3. ~ 6. (생략)</p>	<p>제28조(등록의 취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동일)</p> <p>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3. ~ 6. (현행과 동일)</p>
<장제목 신설>	제6장 국회의 통제
<p>제15조(국회의 통제) ① ~ ③ (생략)</p> <p>④ <u>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내지 제10조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29조(국회의 통제) ① ~ ③ (현행과 동일)</p> <p>④ <u>통신제한조치 및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 및 통신자료나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위치정보사업자 등은 매 분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보고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보고서, 통신자료제공보고서 및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u></p>
<p>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삭제>
<장제목 신설>	제7장 벌칙
<p>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p> <p>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p>	<p>제3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p> <p>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이나 대화에 대한 감청을 한 자</p>

현행	개정안
<p>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u>통신제한조치허가서</u>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u>통신제한조치허가서</u>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p> <p>2.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호 신설></p> <p>③ 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④ 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u>통신제한조치영장</u>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u>통신제한조치영장</u>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p> <p>2. 제12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p> <p>3. 제18조제5항의 규정(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u>통신자료제공영장</u> 또는 <u>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영장</u>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료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u>통신자료제공영장</u> 또는 <u>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영장</u>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자료를 제공한 자.</p> <p>③ 제12조제2항(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④ 제12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제17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u>통신제한조치허가서</u>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p> <p>2.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p> <p>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u>통신제한조치허가서</u>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p> <p>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p> <p>5.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p> <p>5의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p>	<p>제31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u>통신제한조치영장</u>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p> <p>2.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p> <p>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u>통신제한조치영장</u>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p> <p>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p> <p>5.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p> <p>6.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p>

현행	개정안
<p>6.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p> <p>2. 제8조제2항 후단 또는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u>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u></p> <p>3.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p> <p>4.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u>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u>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삭제></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p> <p>2.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u>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u></p> <p>3. 제10조(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p> <p>4.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u>통신자료제공 현황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u>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p> <p>5.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u>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u></p> <p>6.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u>통신자료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u></p> <p>7.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u>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u></p>

청 원 인

성명 : 이 요 상 (인) 외 2천 9백 9 인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2 (충정로3가 우리타워)

전화번호 : 02-774-4551 (사이버사찰긴급행동)